

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0일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주민등록번호(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:)	
사업장 규모	대지: m ² , 건물: m ²	
사업장 소재지	주소 (전화번호:)	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30,000원
------	---	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